

‘센텀 아스트롬 SK VIEW’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총액 및 청약통장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물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약 미접수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 불가)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ca-sk.co.kr)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개요 및 일정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134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2층, 지상28층 8개동 총 750세대 중 일반공급 5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54세대 포함]
- 입주예정시기 : 2024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안내예정)
- 분양일정(예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22. 04. 15.(금) 예정	일간신문 및 센텀 아스트롬 SK VIEW 홈페이지 (https://www.ca-sk.co.kr)
• 사이버 건물주택 개관	2022. 04. 15.(금) 예정	센텀 아스트롬 SK VIEW 홈페이지(https://www.ca-sk.co.kr)
• 건물주택 개관	2022. 04. 15.(금) 예정	센텀 아스트롬 SK VIEW 건물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79-136
•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2. 04. 25.(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 인터넷 청약접수(09:00~17:30)
• 당첨자 발표	2022. 05. 04.(수) 예정	당첨자 및 동·호수 선정(개별조회 가능)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스마트폰앱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건물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특별공급 신청을 건물주택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 051-784-8801)로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총공급 세대수	기관추천특공 배정 세대수 *()는 예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059.9930A	59A	59.9930	19.7159	79.7089	133	13(39)
	059.9761B	59B	59.9761	20.5684	80.5445	86	9(27)
	074.7150A	74A	74.7150	24.0195	98.7345	108	11(33)
	074.7417B	74B	74.7417	24.0039	98.7456	93	9(27)
	084.9807A	84A	84.9807	25.8496	111.8303	73	7(21)
	084.9853B	84B	84.9853	27.4856	112.4709	51	5(15)
	합 계						544

- ※ 상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평형 면적(㎡)×0.3025 또는 평형 면적(㎡)÷3.3058]
- ※ 배정세대에 대한 추천 및 예비 추천 배정세대수에 맞게 대상자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주택공급면적 및 세대배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세대)

구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별 배정세대수						
추천유형	추천기관	59A	59B	74A	74B	84A	84B	소계
국가유공자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4(12)	4(12)	3(9)	3(9)	2(6)	1(3)	17(51)
장기복무 세대군인		1(3)	-	1(3)	1(3)	1(3)	-	4(12)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1(3)	1(3)	1(3)	1(3)	1(3)	1(3)	6(18)
장애인	부산거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2(6)	2(6)	2(6)	2(6)	2(6)	2(6)	12(36)
	울산거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1(3)	-	1(3)	-	-	-	2(6)
	경남거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1(3)	-	1(3)	-	-	-	2(6)
중소기업 근로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3(9)	2(6)	2(6)	2(6)	1(3)	1(3)	11(33)
합 계		13(39)	9(27)	11(33)	9(27)	7(21)	5(15)	54(162)

- ※ (괄호안에) 수치는 예비추천자로 300%를 적용하였습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전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II 공급 개요 및 일정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무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특기·청약과밀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 의무 없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 하며,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등·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과거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번호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상자 추천 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III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